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안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후보자별 답변

I

6대 핵심 아젠다

연번	정책 아젠다	후보자 답변		
		오영훈 후보	허항진 후보	박찬식 후보
1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2	전 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3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3-1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사회복지부서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3-2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3-3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으로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0% 설치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3-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 정책관’ 직제 신설	부분수용	전부수용	수용불가
4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4-1 ICT 융합 기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운영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4-2 사회복지현장 안전보건지원 시스템 구축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4-3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정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6-2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확대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2-1)

연번	정책 아젠다		후보자 답변		
			오영훈 후보	허향진 후보	박찬식 후보
1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1	여성복지사업 제도개선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2-1	비영리법인 운영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2-2	양로시설 냉난방비 현실화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2-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인상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2-4	복지포인트 지원액 인상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2-5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현실화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3-1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3-2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3-3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도적 정착 및 지속 추진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4-1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 지원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4-2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지원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5-1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5-2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6-1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준수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7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				
	7-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원체계 현실화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8-1	제주형 아동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8-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통합돌봄 서비스 구현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2-2)

연번	정책 아젠다	후보자 답변		
		오영훈 후보	허항진 후보	박찬식 후보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9-1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사업장) 무상임대 지원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9-2 자활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와 활성화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9-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9-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확충 및 사업 활성화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 그룹홈 인력 충원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10-2 그룹홈 임대료 지원	전부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1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11-1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2-1 장애인복지관 최소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선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3-1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력 고용안정 보장	부분수용	부분수용	전부수용
1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4-1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3% 확대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5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15-1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전부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16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			
	16-1 청소년복지사업 제도개선	부분수용	전부수용	전부수용

III

수용 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기타 후보자 의견)

□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1.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코로나 등의 사회적 위험 안전망으로 2022년 22.3%까지 확충한 복지예산규모를 임기 3년차 내 25%를 우선 확보하고 30%선까지 중기 계획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국비 반환액을 포함한 잔액이 현재 2.3%대인데 예산기준 2% 미만이 되도록 도기획조정실과 도보건복지여성국,시 관련국간 정기적 논의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전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에 대한 최저기준 국제협약에 대해 국가대응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제주도가 개발한 9개 영역(돌봄,건강,교육,고용,주거,소득,안전 등)의 복지기준선은 국가와 별개로 제주도민을 위한 독자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매우 필요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니다. 정부차원의 국민복지기준선(사회보장기준선)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며, 도민간 복지의 결과적 균등을 위해 도정의 중기 30% 복지재정 확보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3.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3-1.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사회복지부서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보건복지분야는 코로나19 이후 특히 창조적 정책입안 및 실행이 중요합니다. ‘포용사회’라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함에 있어 개방형 직위 유지에 동의합니다.

3-2.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저는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 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설치 역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윤곽 안에서 복지사무와 예산의 기초단체 위임과 조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지금의 경우는 기획조정실과 도보건복지여성국,행정시간 유기적 논의구조가 바람직하며 ‘조정위원회’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복지전달체계에서 ‘도’는 정책입안부서 역할, 조직(인력)과 예산은 시와 읍·면·동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함을 피력합니다.

3-3.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으로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100% 설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설치된 현재 25개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43개 읍·면·동 전체로 확충 필요성 대해서는 공감하나 도본청 사회복지인력의 적절성,행정시와 읍·면·동 인력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단계적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3-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정책관’ 직제 신설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천착과 아동돌봄 등 신규수요에 대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복지를 위해 돌봄정책관(혹은 돌봄정책과)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정 인수과정에서 전반적인 직제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4.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4-1. ICT융합기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청각,시각,발달장애,지체중증)와 어르신의 안전 등 케어를 위한 사회안전망 뉴딜로서 정부지원책을 모색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충분히 가치를 갖기에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뉴딜정책을 총괄하는 현재의 정책기획관실과 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담당관실,사회서비스원)를 구축하고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2. 사회복지현장 안전보건지원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시설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의무가 매우 강화된 바 도가 나서서 산업안전 및 보건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유도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4-3.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도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등 자생단체와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이 교육수강을 의무,혹은 권고하는 조례(복지협치 기본조례에 포함)를 마련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협치 기본조례」 제정

지금까지 협치는 수직적 관계의 관주도협치였습니다.민·관간은 보조금지원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갑을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포용복지와 포용사회를 위해 동등한 협력관계로서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2013년(국비지원시설 2015년) 제정하고 그간 수십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도’ 지침으로 제정한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이 시설유형별, 직급별 기준이 차이가 나고 ,시간외 수당 지원단가가 상이하며,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을 두고 있어 시설별 현장 처우가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시설종사자간 갈등을 야기하는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6-2.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확대

2019년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복지종사자에게 년 10만 포인트 ~ 20만 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법정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복지 종사자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음을 압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되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포함되는 민간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귀측이 제안한 부분별 아젠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안한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제주유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치유 및 회복지원을 위한 국립 사회복지연수원 제주유치를 위해 문제 인정부 때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정간 추진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유치하겠습니다. 국립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를 타지역에서도 희망하는 것으로 압니다. 초기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제주가 적합한 장소로 보고 있기에 건립계획 수립 및 중앙 투·융자 심사, 전액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대 중앙정부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 부분별 아젠다 중 수용에 따른 설명은 가름하며 부분수용 의사 역시 수용을 전제로 깊게 검토하고 단계적 추진의사를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연번	부분 수용 사유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	
8-1 10-1 12-1	(부분수용)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부족 (29인 아동이용, 종사자 대부분이 시설장 포함 2인) 근무, 그룹홈의 인력부족(시설장 포함 3인이 7명 관리) ,농아복지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복지부 권고 기준 이하 인력운영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인력 현황 및 인건비 지급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충원
3-2	(부분수용) 도내 영구임대아파트 내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아라동 주공아파트 소재 아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아파트내 종합사회복지관임. 영구임대 아파트내 주민의 경우 알콜성 의존증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임.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인력이 기확보된 전문기관과 연계방안과 확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와 ‘정든마을 아파트’ 를 포함하도록 하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와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음

연번	부분 수용 사유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	
4-1 4-2	(부분수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회계,세무,인력관리 요구로 법인사무가 과중한 반면 법적으로 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의 지원장구노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 우선 법인산하 시설직원이 법인업무 겸직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제주도와 협의 가능한바 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에 회계사무 등을 위한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강구하겠음
13-1	(부분수용) 핵심 아젠다 중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전면 개정’ 과 연동하여 검토하겠음
12-2 12-3	(부분수용)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비용을 보조사업자 자체재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닌 지방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과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관리 운영지침의 취지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또한 공공시설물 건립사업도 자부담율도 마찬가지로 사안임. 사회복지시설을 분리해야 할 것인지 깊게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14-1	(부분수용) 출자출연기관까지 장애인생산물 구매를 준의무화하여 임기 3년차에 2%를 상회하도록 하며 최종년도에 3%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6-1	(부분수용) 임상치료인력이 기 확보된 전문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쉽터’ 예산지원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탁여부를 민간입장에 맞게 정하겠음

☐ 허향진 후보(국민의힘)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부분수용부분 : 운영비 등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박찬식 후보(무소속)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3-4	현재 성평등정책관을 보건복지여성정책관으로 임명하여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실로 격상하겠습니다.